



##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7. 6.] [환경부령 제927호, 2021. 7. 6., 일부개정]

환경부 (녹색전환정책과) 044-201-668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환경기준 등의 공표)** 환경부장관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(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)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.

**제3조(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)**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(이하 “국가환경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에 부합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·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·보전 계획

가.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·생태환경

나. 대기·수질·토양 및 기후 등 생활·기후환경

2. 시·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[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<2021. 7. 6.>]

**제4조(시·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)**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(이하 “시·도 공간환경정보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

2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**제5조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)**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환경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·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·보전 계획

가.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·생태환경

나. 대기·수질·토양 및 기후 등 생활·기후환경

2.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**제6조(시·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)**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(이하 “시·군 공간환경정보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
2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**제7조(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)** ①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”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.

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”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 5. 26.]

[제3조에서 이동 <2021. 7. 6.>]

**부칙** <제927호,2021. 7. 6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구분	법인[ ]	법인이 아닌 기관·단체[ ]
	기관·법인 또는 단체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 / 팩스번호	
	주소	(우편번호: )	
센터 소재지 (예정)			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7조의2제1항·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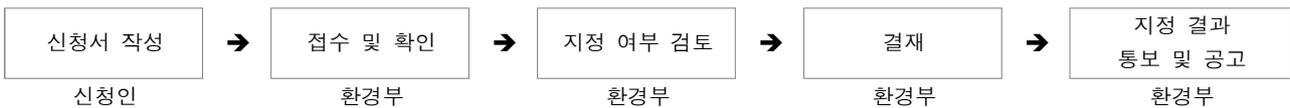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.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.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.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	수수료 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

제 호

##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:

위 기관(법인 또는 단체)을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7조의2제1항·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 직인

